BGL
부산·김해경전철주식회사

하루의 행복, 부산-김해 경전철이 함께합니다.

23년도 차량기지, 사상분소 청소 용역계약 [계약특수조건]

2022. 12.

BGL
부산-김해경전철주식회사

차량기지, 사상분소 청소 용역 계약특수조건

제1조 (용역업무의 수행)

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장소에 사전 배치하여 용역업무 인수인계 및 계약기간 동안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조 (청소원의 고용)

① 계약상대자는 차량기지 청소 인원을 전체(청소반장 포함 총2명)의 고용하여 차량기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.

제3조 (청소원에 대한 책임)

① 계약상대자는 전 종업원의 건강, 신원, 풍기 및 작업 규율의 유지, 안전사고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제4조(현장대리인 권리와 의무)

① 계약상대자는 청소업무 착수 전에 청소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변동이 있을 때 또한 같다.

②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청소책임자는 계약업무 이행에 있어 다음의 각 호의 해당하는 임무를 맡게 하여야 한다.

1.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등 작업상의 지휘명령
2.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발주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
3. 발주자의 계약서에 따른 주문사항의 업무처리
4.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규율.질서유지 및 기타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

제5조 (결원 보충)

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보충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.

제6조 (관계법령의 준수)

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원 급여 지급 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
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
2. 건강보험가입
3. 고용보험 가입
4. 임금채권보장보험 가입
5. 국민연금 가입
6. 피복지급(피복 및 작업화)
7. 임금지불 확인대장 비치(저임금 방지 감독)

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법에서 정한 각종 보험 가입 및 피복지급 또한 최저임금이상 보장 및 확인을 위하여 발주자의 요청 시 임금지불 확인대장을 제출하여야한다.

제7조 (적정임금의 보장)

①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계약담당직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예정가격 산출내역을 기초로 한 직접노무비는 원가계산상의 금액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, 그 이하로 임의감액 조치할 수 없다.

②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종업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, 계약 내역서상 임금에 대한 지급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직원의 증거서류 열람 또는 제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, 적게 지급하였을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매월 지급하는 용역비에서 미지급 임금만큼 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.

④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8조 (용역업체 관리)

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.지도할 수 있다.

제9조 (업체변경에 따른 인수인계)

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전까지 기존업체로부터 각종 시설 및 작업현황 등에 대한 업무인수를 확실히 받아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인수인계서를 작성・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계약상대자는 차기용역 계약을 체결한 용역관리 업체에게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, 인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(착수지연 등)에 대하여 발주자가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 (결원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급)

① 청소용역 인원에 결원(결근포함)이 있을 때에는 월 용역비 지급시 결원(결근포함)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감하고 지급한다.

제11조 (계약기간 연장)

① 이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는 상호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